

#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

**제1조(총칙)** 전주대학교와 계약 상대방자는 물품구매 표준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에 기재한 물품의 구매(“제조”를 포함한다.) 계약에 관하여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한다.

**제2조(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① “계약담당자”라 함은 학교법인 신동아학원 이사장 또는 전주대학교 총장 또는 전주대학교 산학협력단장을 말한다.
- ② “계약상대자”라 함은 계약담당자와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 ③ “규격서”라 함은 물품에 대한 기술적인 요구사항과 요구 필요조건에 일치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절차와 방법을 포함하여 서술한 문서로, 제품의 성능, 재료형상, 치수, 용적, 색채, 제조, 포장 및 검사방법 등을 포함한다.
- ④ “산출내역서”라 함은 입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물량, 규격, 단위, 단가 등을 기재한 명세서를 말한다.
- ⑤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특례규정(이하 각각 “시행령, 특례규정”이라 한다) 시행규칙 및 회계예규 물품구매 입찰유의서(이하 “유의서”라 한다)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계약문서)**

- ① 계약문서는 계약서, 규격서, 유의서,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 산출내역서 등으로 구성되며 상호 보완의 효력을 갖는다.
-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규정된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을 정함에 있어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서 정한 계약사항과 관련법령에 규정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당해 물품구매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한하여 명시할 수 있다.
- ③ 이 조건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당사자간에 행한 통지문서 등은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제4조(사용언어)**

- ①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사용하는 언어는 한국어를 원칙으로 한다.
- ② 계약담당자는 계약체결 시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외국어를 사용하거나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한 경우 외국어로 기재된 사항이 한국어와 상이할 때에는 한국어로 기재한 사항이 우선한다.

**제5조(통지 등)**

- ① 구두에 의한 통지·신청·청구·요구·회신·승인 또는 지시 등(이하 “통지 등”이라 한다)은 문서로 보관되어야 효력이 있다.
- ②통지 등의 장소는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로 하며,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계약당사자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 ③통지 등의 효력은 계약문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당사자에게 도달한 날부터 발생한다. 이 경우 도달 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 ④계약당사자는 계약이행 중 관계법령 및 이 조건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서면으로 정당한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성실히 검토하여 회신하여야 한다.

**제6조(채권양도)**

- ① 계약상대자는 물품제조의 이행을 위한 목적 이외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지 못한다.
- ② 계약상대자가 채권양도를 하고자하는 경우에는 미리 계약담당자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③ 계약담당자는 제2항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채권양도 서면승인 요청에 대하여 계약이행을 위한 목적에 해당되지 않음을 이유로 승인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와 그 채권을 양수하고자 하는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계약보증금)**

- ①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시행령 제50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시행령 제37조제2항의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②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전주대학교에 귀속사유가 발생할

때에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이하 “계약보증금지급각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③ 단가계약에 의하는 경우로서 수회에 걸쳐 분할하여 계약을 이행하게 하는 때에는 매회 별 이행예정량 중 최대량에 계약단가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10 상당금액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 ④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37조제2항제2호에 의한 유가증권이나 현금으로 납부된 계약보증금을 계약상대자가 특별한 사유로 시행령 제37조제2항제1호 내지 제5호에 규정된 보증서 등으로 대체 납부할 것을 요청한 때에는 동가치 상당액 이상으로 대체납부하게 할 수 있다.
- ⑤ 계약상대자는 이 조건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제1항에 따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제8조(계약보증금의 처리)**

- ①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보증금을 전주대학교에 귀속한다.
- ② 시행령 제69조에 의한 장기물품제조 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2차 이후의 물품제조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 제1항을 준용한다.
- ③ 제7조제2항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보증금의 전주대학교 귀속사유가 발생하여 계약담당자의 납입요청이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보증금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 ④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을 전주대학교에 귀속함에 있어서 그 계약보증금은 이를 기성 또는 기납부분에 대한 미지금액과 상계처리 할 수 없다.
- ⑤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계약이 이행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제9조(수량조절)** 계약담당자는 필요에 따라 계약된 물품의 수량을 100분의 10 범위 내에서 증감조절 할 수 있다. 다만 계약담당자가 해당 물품의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동의를 얻어 100분의 10 범위를 초과하여 계약 수량을 증감조절 할 수 있다.

**제10조(계약이행상의 감독)**

-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품의 제조를 위하여 사용하는 재료 및 기타 제조 공정에 대하여 감독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 ②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감독업무수행에 협력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감독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업무를 부당하게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하지 않는다.

**제12조(납품)**

-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납품일까지 해당 물품(검사에 필요한 서류 등을 포함한다)을 산업표준화법 제24조에 따른 규격(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물류정책기본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물류표준을 포함한다)을 준수하여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장소에 납품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의하여 납품된 물품을 검사 수령하기까지 전주대학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물품의 망실, 파손 등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 ③ 계약담당자가 필요해 따라 분할납품을 요구하거나, 계약상 분할납품이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할납품을 할 수 없다.

**제13조(규격)** ①모든 물품의 규격은 계약상 명시된 규격명세서, 규격번호 및 발주기관이 제시한 건품의 규격을 충족하여야 하며, 구매목적에 맞는 신품이어야 한다.

②계약상 규격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관습과 기술적 타당성 및 구매규격 등에 부합되는 견고하고 손색없는 물품이어야 한다.

③예비부속품으로서 기계·기구를 완성하는데 필요한 조립비는 물품가격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계약에 부속품으로 기계·기구를 완성하는데 필요한 조립비가 별도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4조(포장 및 품목 표시)**

- ① 포장은 계약조건과 계약규격서에 규정된 포장조건에 따라야 하며 내용물의 보전에 충분하여야 한다.
- ② 기계의 모체와 분리하여 부속품 또는 예비부속품을 포장할 때에는 관련 참조번호 및 기호 등을 명기한 꼬리표를 붙여야 한다.
- ③ 계약상대자는 대한민국 외에서 제조된 계약물품을 납품하고자 할 때에는 관세청장이 고시한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대외무역관리규정에 의하여 원산지를 해당 물품에 표시하여야 한다.

**제15조(포장면에 표기할 사항)** 물품의 포장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1. 제작자 상호 및 계약상대자 상호
2. 계약번호
3. 품명 및 물품저장 번호
4. 포장내용물의 일련번호 및 수량
5. 순무게, 총무게 및 부피
6. 취급 시 주의사항
7. 기타 계약상 요구되는 표기

**제16조(표기)**

- ① 납품한 물품에는 계약상 규격서에 규정된 포장 외에 제작자명 또는 상표와 발주기관이 정한 관수품 표시를 하여야한다.
- ② 표지는 물품의 형태 또는 성질에 따라 인쇄, 금속판 첩찰, 꼬리표 또는 기타 방법에 의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 ③ 물품에 표기하여야 할 표지는 그 물품의 지구성과 같아야 하며 포장의 표지는 목적된 장소에 도착할 때까지 선행하여야 한다.

**제17조(포장명세서)**

- ① 계약상대자는 납품할 때 포장내용물에 관하여 상세히 기재한 포장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② 포장명세서에는 포장번호, 포장수, 포장품명, 수량, 순무게, 총무게, 부피 등을 기명하여야 한다.
- ③ 포장에는 포장명세서 1통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드럼통 등 명세서를 첨부하기 어려운 것에는 용기에 기명하여야 한다.

**제18조(사용 및 취급주의서)** 계약상대자는 사용 및 취급상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에는 그 물품의 사용, 보관, 수리 등의 요령과 주의사항을 명기한 주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검사)**

-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을 완료한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기납부분에 대하여 완납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 ②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6조에 따라 품질경영우수기업 등으로 선정된 자가 제조한 제품 및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3조의3에 따라 조달청장이 고시한 품질관리능력 평가기준에 적합한 자가 제조한 물품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검사를 면제하여야 한다. 다만, 특약조건이 있거나 해당 물품이 성질상 생명보호, 안전, 보건위생 등을 위하여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불량 자재의 사용, 다수의 하자 발생 등으로 품질의 확인이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검사와 관계된 규정 및 다음 각 호의 요령에 따라 계약서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그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하여야한다. 다만, 천재, 지변 등 불가항력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해당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이를 연장할 수 있다.
  1. 검사는 품질, 수량, 포장, 표기상태, 포장명세서, 품질식별기호 등에 관하여 행한다.
  2. 물품을 신규로 제조할 필요가 있거나 물품의 성질상 제조과정이 중요한 경우에는 제조과정에서 검사를 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검사를 받기 위하여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물품을 반입하였을 때에는 즉시 반입통지를 하여야 한다.
  4. 검사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과 검사를 하기 위한 변형, 소모, 파손 또는 변질로 생기는 손상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 ④ 계약담당자는 제3항의 검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 받은 날로부터 제3항의 기간을 계산한다.
- ⑤ 제3항의 따른 검사에 합격하지 못하여 계약이행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계약담당자는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한다.
- ⑥ 계약상대자는 제3항의 의한 검사에 입회·협력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입회를 거부하거나 검사에 협력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체에 대하여는 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 ⑦ 계약상대자는 제3항 및 제4항에 의한 검사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담당자는 지체없이 검사를 하여야 한다.

- ⑧ 계약담당자는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0조(특허 및 상표)**

- ①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상표 또는 특허상의 문제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 ②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발주기관이 손해를 받은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21조(보증)**

- ① 계약상대자는 검수와는 별도로 납품 후 1년간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동일함을 보증하여야 한다.
- ② 계약담당자는 납품 후 1년 이내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상이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해당물품의 대체납품 또는 해당 물품대금을 반환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 ③ 계약상대자는 제2항의 통지를 받으면 조속히 해당 물품을 계약조건에 따라 대체납품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모든 대체물품 가격과 이에 따르는 경비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 ④ 제3항의 대체물품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한다.
- ⑤ 계약상대자가 계약담당자가 요구한 물품의 대체를 거부하거나, 계약담당자가 통지를 한 후, 소정기일 내에 물품의 대체납품을 하지 못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해당 물품가격을 전주대학교에 반납하여야 한다.

**제22조(대가의 지급)**

-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을 완료한 후 제19조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소정 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14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가의 지급기간을 연장하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 ③ 천재, 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해당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대가의 지급을 연장할 수 있다.
- ④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계약수량, 이행의 전망, 이행기간 등을 참작하여 적어도 매 30일마다 공평하게 지급하여야 하며 제19조 제3항에 의한 검사를 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 ⑤ 계약담당자는 제1항 또는 제4항의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반송한 날로부터 제청구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2항 또는 제4항의 지급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 ⑥ 제4항에 의하여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1항 단서에 의한 산출내역서의 단가에 의하여 이를 계산한다.

**제23조(대가지급 지연에 대한이자)**

- ① 계약담당자는 대가지급청구를 받은 경우에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대가지급기한(전주대학교채무부담행위에 의한 계약의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 개시 후 예산회계법에 의하여 당해예산이 배정된 날부터 20일)까지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급기한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이하 “대가지급지연일수” 라 한다)에 해당 미지급액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일반자금대출시 적용되는 연체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할 수 있다.
- ②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 또는 대가지급이 지연된 경우에 제19조제3항단서 및 제22조제3항에 의한 지연기간은 제1항의 대가지급 지연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4조(지체상금)**

-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서 정한 납품기한 내에 물품을 납품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상금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 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납부할 금액이 계약금액(제2항에 따라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으로 한다.
-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경우에 기납부분에 대한 검사를 거쳐 당해 부분을 인수(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하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기납부분의 인수는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물품에 대한 완성부분으로서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
- ③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납품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제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계약상대자가 대체사용 할 수 없는 중요 판급재료의 공급이 지연되어 제조공정의 진행이 불가능할 경우
  3.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이 납품이 지연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전주대학교의 물품제작을 위한 설계도서 송인이 계획된 일정보다 지연된 경우(관련서류의 누락 등 계약상대자의 잘못을 보완하는 기간은 제외한다)
    - 나. 계약상대자가 시험기관 및 검사기관의 시험·검사를 위해 필요한 준비를 완료하였으나 시험기관 및 검사기관의 책임으로 시험·검사가 지연된 경우
    - 다. 설계도서 송인 후 전주대학교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제작기간이 지연된 경우
    - 라. 전주대학교의 책임으로 제조의 착수가 지연되었거나 중단되었을 경우
  4.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은 사유로 인하여 지체 된 경우
- ④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의한 지체일수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 하여야 한다.

1. 납품기한 내에 제12조제1항에 의하여 물품(검사에 필요한 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을 납품한 때에는 제19조에 의한 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납품기한 이후에 제19조제4항에 의한 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한 날부터 최종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검사기간이 제19조제3항에서 정한 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동조에 정한기간에 한 한다. 이하 같다.)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2. 납품기한을 경과하여 물품과 검사서류를 제출한 때에는 납품기한 익일부터 검사(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최종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 ⑤ 계약담당자는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하여 산출된 지체상금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 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또는 기타 예치금 등과 상계할 수 있다.

#### 제25조(계약기간의 연장)

- ① 계약상대자는 제24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계약기간 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종료 전에 계약담당자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을 청구할 수 있다.
-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기간 연장 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이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③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연장청구를 승인하였을 경우에는 제24조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불구하고 계약상대자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지체상금이 시행령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목적물이 전주대학교 정책사업 대상이거나 계약의 이행이 노사분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연된 때에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기간의 연장은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한 때에 하여야 하며, 연장된 계약기간에 대하여는 제2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26조(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가능성이 있고 계약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아니한 부분에 상당하는 계약보증금(당초 계약보증금에 제24조제1항에 따른 지체상금의 최대금액을 더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추가 납부하는 때에는 계약을 유지한다.
  1. 계약서상의 납품기한(또는 연장된 납품기한) 내에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규격 등과 같은 물품납품을 거부하거나 완료하지 못한 때
  2.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납품기일 내에 납품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경우
  3. 제24조제1항에 의한 지체상금이 시행령 제50조제1항에 의한 해당 계약의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
  4. 장기물품제조 등의 계약에 있어서 제2차이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5. 계약의 수행 중 뇌물수수 또는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6. 입찰에 관한 서류 등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
  7.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기납부분 검사를 필한 물품을 기납부분으로서 인수한 경우에는 해당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한다.

-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상 기한 내에 해당물품을 납품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체 없이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27조(사정변경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 ① 전주대학교는 제26조제1항 각호의 경우 외에 객관적으로 명백한 전주대학교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 할 수 있다.
- ② 전주대학교는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제 또는 해지한날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7조에 의한 계약보증금을 동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1. 제22조제4항의 대가 중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
  2. 전체 물품제조의 완성을 위하여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일 이전에 투입된 계약상대자의 인력·재료 및 장비의 철수비용
- ③ 계약상대자는 선금에 대한 미정산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발주기관에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정산 잔액에 대한 이자는 가산하지 아니한다.

**제28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상대자가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주대학교로부터 일정기간 동안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받게 된다.

#### 제29조(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엄수의무)

- ① 전주대학교는 계약서상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각종 보고서, 정보, 기타자료 및 이에 의하여 얻은 기술지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약상대자의 승인을 얻어 전주대학교의 이익을 위하여 복사, 이용 또는 공개할 수 있다
- ②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을 통하여 얻은 모든 정보 또는 국가의 기밀사항을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

#### 제30조(분쟁의 해결)

- ① 물품계약의 수행 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 ② 분쟁이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1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해결한다.
  1. 관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조정위원회 등의 조정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기관의 중재에 의한다.
  2. 제1항의 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전주대학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의 판결에 의한다.
-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분쟁기간 중 물품계약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

| 목     |         | 차      |            |
|-------|---------|--------|------------|
| 제 1 조 | 계약의 체결  | 제 8 조  | 납품모델 규격 준수 |
| 제 2 조 | 계약이행보증금 | 제 9 조  | 납품물품의 검수   |
| 제 3 조 | 납품기한    | 제 10 조 | 추가구매       |
| 제 4 조 | 지체상금    | 제 11 조 | 계약해지       |
| 제 5 조 | 하자보증기간  | 제 12 조 | 저작재산권 양도   |
| 제 6 조 | 하자보증금   | 제 13 조 | 기타사항       |
| 제 7 조 | 유지보수    | 제 14 조 | 물품명세서      |

**제1조(계약의 체결)** 낙찰자는 전주대학교 또는 전주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요청한 후 5일 이내에 물품구매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2조(계약이행보증금)**

- ① 낙찰자는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금액의 10/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으로 전주대학교에 납부하여야 한다.
- ②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당해 계약보증금은 본교에 귀속한다.

**제3조(납품기한)** 계약상대자는 정해진 규격의 물품을 **계약 이후 30일 이내**에 지정된 장소에 납품 및 설치 완료하여야 한다.

**제4조(지체상금)**

- ① 낙찰자가 납품기한 내에 물품을 납품하지 못했을 경우 지체 1일당 계약금액의 0.75/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상금으로 전주대학교에 납부하여야 한다.
- ② 지체상금 발생 시 전주대학교는 물품 검수 후 낙찰자로부터 지체상금을 정수 받고 물품대금을 지급하며 계약상대자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 ③ 지체상금의 정수가 지연될 경우, 지체상금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 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또는 기타 예치금과 상계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하자보증기간)** 납품된 물품에 대한 무상 하자보증기간은 **[1년]** 으로 한다.

**제6조(하자보증금)**

- ① 낙찰자는 계약의 하자를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금액의 10/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행하자보증보험증권**으로 전주대학교에 납부하여야 한다.
- ②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당해 계약보증금은 본교에 귀속한다.

**제7조(유지보수)** 무상 하자보증기간이 만료된 후 납품한 물품에 대하여 하자가 발생할 경우 전주대학교에서 요청하면 유지보수는 계약자가 책임을 지고 해결해 주어야 한다. 다만, 보수에 따른 비용이 발생할 경우는 실비 범위 내에서 청구하여야 한다.

**제8조(납품모델 규격 준수)** 계약상대방은 반드시 본교에서 지정한 물품 또는 입찰 전에 제시한 규격의 물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제9조(납품물품의 검수)**

- ① 납품된 물품의 검수는 검수관 및 사용자 입회하여 물품설치를 완료하고 정상적인 작동이 되어야 하며 별도의 전문적인 검증을 요구할 경우 충분히 검증이 완료되어야 납품이 완료되었음을 인정한다.
- ② 검수는 검수관 및 사용자의 검수 날인으로서 최종 종료하며 검수를 통과하였을 경우에 물품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

**제10조(추가구매)**

- ① 납품된 규격의 물품에 대해서는 전주대학교가 추가 구매를 의뢰할 경우 계약금액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 ② 추가구입 물품에 대한 공급 방법 및 납품기한 등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한다.

**제11조(계약해지)**

- ① 계약상대자가 학교와 계약 체결한 사항들을 이행할 수 없다고 판단이 될 경우 학교에서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② 또한, 계약 보증금은 물품구매 특수조건 2조에 의한다.

**제12조(저작재산권 양도)**

- ① 계약상대자는 본 입찰의 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PDF파일, 편집파일, 인디자인파일, 등) 일체(2차 저작물 제작 권리 포함)를 전주대학교에 무상으로 양도한다.
- ② 계약상대자는 저작물에 대한 어떠한 제한권도 설정되지 아니한 완전한 저작재산권을 양도하여야 하며, 제한적 관리가 존재할 시,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전주대학교는 본 입찰의 저작물에 대하여 전주대학교 명의로 재편집, 수정 제작, 출판, 배포, 전시 등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④ 본 입찰의 저작물이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여 전주대학교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계약상대자가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

⑤ 저작물(인쇄, 출판 및 웹 페이지, UI, 영상컨텐츠, 이러닝, 이북, 모바일UI이미지 제작 등 1차·2차 저작물 및 사용범위 모두를 포함)에 대한 폰트와 이미지 관련 법적 문제발생 시, 법적인 책임은 전적으로 계약상대자가 진다.

**제13조(기타사항)**

- ① 입찰 설명회에서 실시한 물품에 대한 구두설명사항도 입찰 제안 설명 사항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계약자는 입찰 설명회 사항도 이를 모두 수용하여 반드시 이행하여야 한다.
- ② 계약상대자는 입찰유의서, 물품구매 특수(일반)조건 및 입찰 설명회 사항 등에 정하여져 있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는 전주대학교와 계약상대자가 상호 합의하여 결정하고 계약상대자는 전주대학교의 요구에 최대한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 ③ 계약상대자가 계약 이행을 불성실하게 이행하였을 경우 전주대학교는 계약자를 불성실업체(자)로 지정할 수 있으며, 불성실업체(자)로 지정된 자는 향후 본교와 거래가 불가하며 본교의 출입을 금지, 또는 제한하거나 전주대학교의 홈페이지에 동 사실을 게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조달청과 같은 관계기관에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제14조(물품 명세서)** 전적서(품목별 산출내역서), 사업개요, 규격서 참조